

의안번호	2217198
의 퇴 인	김용민의원
회 답 일	2026.9.21.
추 계 번호	26D1354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 (이하 “위원회”라 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의무규정
2	안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제1항) 1.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2.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3.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4. 그 밖에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함)을 대통령이 임명함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의무규정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고(제3항),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제4항),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함(제5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진상규명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제1항),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6	안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20조(직권조사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청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음	의무규정/재량규정
8	안 제27조(청문회의 실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32조(검증)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33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함(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41조(보고 및 의견 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이상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항)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 각각을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3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4	안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5	안 제15조(사무처의 설치)	
6	안 제16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7	안 제27조(청문회의 실시)	
8	안 제32조(검증)	
9	안 제33조(조사기간)	
10	안 제41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2. 상세 사유

□ 위원회·사무처·자문기구의 설치 및 조사 등(안 제2조·제3조·제5조·제7조·제15조·제16조·제33조)

- 제정안은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사무처·자문기구를 두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사무처 및 자문기구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사무처·자문기구의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로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 및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유사 위원회 비교

구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존속기한 및 근거	별도 규정 없음	2027.10.4.(여순사건법 제7조)	2026.2.26.(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 제4조) 1기: 2005.12.22.~ 2010.12.31. 2기: 2020.12.10.~ 2025.11.26.
위원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
위원 수(위원장 포함)	25	15명	13명
예산	회의운영예산: 83 사무국예산: 19 사업예산: 15,830 -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 77 - 희생자 추념식 : 1,196	회의운영예산: 304 사무국예산: 1,418 사업예산: 2,771 - 실무위원회 운영 : 141 - 위령사업 지원 : 360	인건비: 6,811 기본경비: 6,792 사업비: 3,266 - 위원회 대외홍보 : 234 - 진실규명조사 : 1,975

	- 4·3사건법 후속조치 : 3,202 -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 1,135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608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 3,800 등	- 사실조사단 구성·운영 : 990 -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 100	- 위원회 정리 : 1,057
--	--	--	---------------------

자료: 행정안전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II-1)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백만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